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전부개정 2012. 6. 11 조례 제 939호
일부개정 2012. 12. 31 조례 제 966호
일부개정 2014. 10. 15 조례 제1071호
일부개정 2019. 12. 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 2. 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1. 6. 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1. 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이천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관고동)에 두며,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연구
2. 고고·미술·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소장품의 보관·보존 처리 및 전시
4. 향토사의 조사·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
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
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관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5>

1. 1월 1일, 설날·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시장은 박물관 전시물 관람료와 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2014·10·15>
3. 보호자와 함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15>

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전시품·소장품·유물 등의 모사 및 촬영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삭제 <2014·10·15>

5.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분실 또는 더럽혀 못쓰게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박물관운영위원회

제10조(박물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문화계·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2·28>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박물관 담당은 간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제목개정 2012·12·31]

제15조(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10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28>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
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증·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

⑤ 소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료 등의 수집 및 관리

제17조(자료 등의 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자료 등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자료 등의 기증·기탁)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 등의 기증·기탁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기탁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자료 등에 대하여 훼손·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대관

제20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용도) 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전통문화의 보존·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등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3. 정부기관·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전시실

2. 그 밖에 옥내·외 공간

제21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박물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2조제2호·제3호를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정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다.

1. 재해·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장 위탁관리 및 운영

제2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시장은 박물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적용범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위탁업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운영) 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기준으로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및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28조(수탁자 심사 및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에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시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5·11·7>

제2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박물관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망가지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

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시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개보수 공사 및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사항에 관한 사항

2.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 보완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박물관의 수탁기간 동안 박물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3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

2. 수탁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조례·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재 위탁 금지)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6·25, 2025·11·7>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 <2020·2·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 〈2025·11·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